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형찬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726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발 의 자: 우형찬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성준, 박강산, 박수빈,
박승진, 박유진, 송도호,
송재혁, 아이수루, 이소라,
이용균, 임규호, 전병주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'19~23년 최근 5년간 전국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의 경우, 전국 대비 서울의 비율이 50%에 육박('19년 전국 393개동 중 194개동, '23년 전국 468개동 중 228개동) 하며,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 비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('23년 228개동 중 207개동)
- 특히,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, 재난발생 요인 가운데 대규모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로 인해 화재발생 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곳으로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, 관리주체의 화재 및 대피 동선 등의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관한 조항 신설

2. 주요내용

- 가. 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시, 대피 등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제11조(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) 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| 제11조(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 |

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(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)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| 조항 | 사업명 | 예산액(천원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제11조 |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 개선 | 100,000 |

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추계분석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 1] 2024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 개선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'24.1.~12.
- 사업수행주체 : 서울특별시
- 추진방법 :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 개선 용역
- 사업의 주요내용 : 재난관리계획 수립·시행 의무화